

광주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3나11361(본소), 2013나11392(반소) 판결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 손해배상(기)]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3나11361(본소), 2013나11392(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8. 29 선고 2012가합3085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B

피고(반소원고), 항소인C

변론 종결2014. 10. 24.

판결 선고2014. 12. 5.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8. 29. 선고 2012가합3085(본소),
2013가합3051(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794,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10분하여 그 1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 C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7.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기각 및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및 용선계약의 체결과 경매절차의 진행

○ 원고는 2006. 4. 6.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용선료를 1억 원으로, 용선기한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겸 소유권이전일인 2007. 8. 5.까지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1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4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매매대금 지불방법

가. 계약금 1억 원(계약당일 지급)

나. 잔금 365,000,000원(2007. 8. 5. 지급)

제8조 계약위반 : 매도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반할 시에는 계약금은 무효로 한다.

제11조 이 사건 선박의 용선에 따른 용선료 1억 원을 위 계약금으로 한다.

○ 그런데 2006. 6.경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피고 B의 채권자인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청구금액 합계 71,345,427원)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청구금액 57,023,697원)명의로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한편 피고 B은 2006. 5. 4. 신용보증기금(채권최고액 237,000,000원) 앞으로, 2006. 7. 3. G(채권최고액 1억 원) 앞으로 제4, 5순위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위와 같은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중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8. 1. 11.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위 지원 D).

○ 피고 B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기 위하여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이하 '보령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C 명의로 22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C 명의로 2009. 6. 5.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보령수협, 채권최고액 2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체결

○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 B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와 피고 B은 2009. 11. 19. 검찰의 조정센터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갑 제3호증).

○ 원고는 2009. 11. 2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2조(매매금액 및 이행조건) 매매대금은 540,000,000원으로 정하되, ① 2009. 11. 19. 현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조로 기지급한 금 260,000,000원(= 제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어음관련 채무 160,000,000원)을 인정하고, ② 220,000,000원은 보령수협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 한다)을 선박 인도시에 승계하며, ③ 잔금 60,000,000원과 별도의 이자 4,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기일 2010. 11. 30.로 된 국민은행 여수지점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

제3조(본선의 인도) 원고와 피고 B은 2010. 6. 30.까지 이 사건 선박을 전남 완도항에서 인도한다.

제5조(위약금) 원고와 피고 C 양당사자의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원고는 계약금(1차 중도금)을 포기하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그 배액을 제공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기로 한다.

제7조(계약해제) 원고와 피고 C 양당사자의 일방이 2009. 11. 19.자 이행각서1)를 위반 시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조건) 원고의 귀책사유로 채무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 인수시까지 선박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시기를 연기한다.

다. 제2차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 원고는 제2차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 C에게 선박 매매잔금 및 이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 발행의 액면금 64,000,000원, 지급기일 2010. 11. 30.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약속어음 결제계좌에 2010. 11. 30.경까지 67,256,496원을 입금하여 두었다.

○ 피고들은 그 후 보령수협에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 C에서 선박매수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이 보령수협의 관외이어서 선박의

운항현황 및 선박 관리실태를 파악할 수 없고, 채무인수자의 재무상태, 신용도, 신분 등이 불확실하다는 사유로 채무자 명의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선박인도일인 2010. 6. 30.까지도 위 근저당채무는 인수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2010. 7.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선박인도 및 인도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0. 8. 10.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인수 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로써 선박인도와 이전등기만을 구하므로 제2차 매매계약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제2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위 해남지원은 2011. 5. 4. '피고 C은 제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며, 월 700만 원 비율의 용선료 수입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해남지원 2011. 5. 4. 선고 2010가합426 판결). 이에 원고는 위 판결로 가집행을 하여 2011. 6. 17. 이 사건 선박의 임차인인 E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한편,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2776 판결),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4. 13.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012. 4. 23.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1. 12.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선박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2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피고 B에 대하여는 2012. 8. 2., 피고 C에 대하여는 2012. 8.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위 260,000,000원은 제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인데 제2차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위 260,000,000원은 제2차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라 몰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은 제2차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C 양 당사자의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원고는 계약금(1차 중도금)을 포기하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그 배액을 제공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는 '보령수협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이며, 보령수협이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사유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수 없게 된 것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537조에 따라 위 채무인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반대급부도 청구할 수는 없는데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 및 그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인수에 관하여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들로서는 원고에 대한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제2차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2010. 8. 10.자 계약해제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보령수협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것에 관하여 정식으로 요청받은 적은 없고, 다만 전화로 선박매수인에 대한 언급 없이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만 문의받았으나, 선적항이 보령수협 관외로 선박의 운항현황 및 관리실태의 파악이 어렵고, 채무인수자의 재무상태, 신용도나

신분 등이 확실하지 않아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H은 2010. 8. 내지 10.경 보령수협 보령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선박이전과 관련된 선박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인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승계가능 여부, 대출잔액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보령수협은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 B은 제2차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선박을 계속 사용하여야 할 사정이 생기자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제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이 사건 관련소송이 진행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수 없게 된 것이 원고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지 않거나 또는 나머지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였다기보다는 원고는 제2차 매매계약상의 채무인수조항의 의미를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로 보고 전체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근저당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는 전제에서 관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 6948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원고가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을 이행인수계약으로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제2차 매매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인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위와 피고 B이 제2차 매매계약의 해제를 거듭 요청하였던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주장하였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차 매매계약이 위 계약의 유지와 이행을 원하였던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C은, 제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도 피고 B이 받았을 뿐 자신은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2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만을 제2차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 삼기로 하는데 서로 의사가 일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차 매매계약서 모두 부분에는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피고, 매도인 C의 부친인 선박관리인 피고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말미에는 매도인으로 피고 C이, 선박관리인으로 피고 B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상의 의무를 '갑과 병(피고 C과 피고 B을 의미한다)'이 이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계약 위반시에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계약금(1차 중도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은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공동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끝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2006. 4. 6.부터 2008. 1.경까지 20개월 동안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였으므로 140,000,000원(= 20개월 × 700만 원)의 용선료 채권으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은 제1차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잔금지급 기일까지의 용선료에 충당하기로 한 점, 원고는 피고 B이 제1차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그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에 2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금액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하여 2009. 11. 20.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제1차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2차 매매계약의

대금이 제1차 매매계약보다 75,000,000원 증액된 540,000,000원인 점, 피고 B은 그 이후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용선료의 지급을 청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은 2009. 11. 19.경 그 이전에 발생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용선료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및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원고의 실효된 가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가집행일인 2011. 6. 17.부터 선박반환일인 2011. 12. 16.까지 6개월간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그 손해는 같은 기간에 상응하는 용선료 상당으로서 피고들이 2010. 6. 30. 이전까지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하여 월 700만 원 상당의 순수익을 얻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하여 월 700만 원 정도의 용선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에게 손해배상으로 6개월간의 용선료 상당액 42,000,000원(= 6개월 ×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반환일 다음날인 2011. 12.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 주장

1) 원고는 제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60,000,000원에 대한 2007. 1. 1.경부터 2012. 8. 20.까지 연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의 원상회복청구권으로 피고 C의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2) .

2)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1. 19.경 그 이전에 발생한 채권·채무들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였고, 2009. 11. 20.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정산금채권과 제2차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260,000,000원에 대한 법정이자 2009. 11. 20.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해제시기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2. 8. 2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2. 8. 20.이 이행기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채권으로 피고 C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 다음과 같이 총당된다.

가) 원고의 계약금 등 반환채권 260,000,000원에 대한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발생기간 : 2009. 11. 20.부터 2012. 8. 20.까지

○ 계산 : 28,628,415원 $\{=260,000,000 \times 4\% \times (2\text{년} + 9\text{개월} / 12\text{개월} + 1\text{일} / 366\text{일})\}$, 이하 원 미만
버림, 원고가 구하는 연 4%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나) 피고 C의 손해배상채권

○ 원금 : 42,000,000원

○ 이자 : 연 5%, 2011. 12. 17.부터 2012. 8. 20.까지

계산 : 1,422,950원 $\{=42,000,000 \times 5\% \times (8\text{개월} / 12\text{개월} + 4\text{일} / 366\text{일})\}$

다) 상계충당내역

먼저 원고의 위 이자채권으로 피고 C의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총당하면

27,205,465원 $(=28,628,415\text{원} - 1,422,950\text{원})$ 이 남고, 그 남은 금액을 피고 C의 손해배상채권의 원금에 총당하면 위 손해배상채권은 14,794,535원 $(=42,000,000\text{원} - 27,205,465\text{원})$ 이 남게 된다.

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부당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794,535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2. 8. 21.부터 원고가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C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 C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수환

판사박현수

판사전일호

별지

1) 위 이행각서는 피고 B과 원고 대표이사 H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가 다르고, 이 사건 선박의 등기이전일을 2010. 6. 30.로 정한 것 외에는 제2차 매매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원금에 대한 이자의 기산점은 원금의 수령일인바, 원고는 위 260,000,000원에 대한 2007. 1. 1.부터 6년 동안의 이자 상당액으로 상계를 하더라도 피고 C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에서 위 260,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상계주장은 2007. 1. 1.부터 피고 C에 대한 소장 송달일(2012. 8. 20.)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